

의안번호	제 9 호
의결연월일	

의결사항

사천시 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연월일	2004. 5.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연월일	2004. 5. 3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031호, 2003.12.30)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사천시세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조정(안 제8조)
- 나. 시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근거 마련(안 제16조의2제3항)
- 다. 시세의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가산세 제도의 근거마련(안 제21조·제40조의4·제60조·제61조·제98조)
- 라. 2005년부터 자동차를 승계취득시 일할신청과 관계없이 소유기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는 근거마련(안 제38조의2)
- 마.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율을 1,000의 175로 인상함(안 제40조의3)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기획담당관실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 2) 입법예고(2004.3.26 ~ 2004.4.17)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로 하고, “지명” 을 “임명”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사천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제7조의2제1호” 를 “제6조의2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의2제2호” 를 “제6조의2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사천시통반설치조례 및 사천시이장임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통장(이장)·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제21조의 제목 “(신고·납부)” 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동조제2항중 “신고납부 ”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 제목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 하여 부과·징수 하는 경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8조의2(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한다.

제39조의 제목“(수시부과하는경우의 세액계산)”을“(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75”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신고납부)”를“(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중“신고납부하고자”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로 하며, “신고함과 동시에”를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거”로 한다.

제60조의 제목“(신고·납부등)”을“(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며,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를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로 하며, 동호 단서중 “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한 세액”으로, 동조동항제5호 본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신고납부한”을 “신고한”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영 제194조의16제3항이 정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제90조 건축물란중 과세기준일 “매년 5월1일” 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 “매년 6월16일 ~ 6월30일” 을 “매년 7월16일 ~ 7월31일”로 한다.

제98조제1항 및 제2항중 “신고납부” 를 각각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7월 10일” 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제2항·제38조의2 개정규정은 2005년1월1일부터,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①(생 략)</p> <p>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u>지명</u> 또는 위촉한다.</p> <p>1.~ 4.(생 략)</p>	<p>제8조(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①(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 ----- ----- ----- ----- ----- ----- ----- ----- ----- ----- ----- ----- ----- 임명----- ----- ----- ----- ----- ----- ----- -----</p> <p>1.~ 4.(현행과 같음)</p>
<p>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사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사천시통반설치조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장)·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사천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한다.</p>
<p>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급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p>	<p>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제6조의2제1호----- ----- ----- ----- ----- ----- -----</p>

현행	개정안
<p>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특별 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p> <p>1.~ 4.(생략)</p> <p>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p>	<p>②----- ----- ----- -----신고하고 납부-----.</p> <p>1.~4.(현행과 같음)</p> <p>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p> <p>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2조의2제1항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 ①~④(생략)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 ①~④(현행과 같음)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수 있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 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신설>	제38조의2(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p> <p>①~②(생략)</p> <p>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제39조(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p>	<p>제40조의3(세율) ①----- -----1,000분 175 -----.</p>

현행	개정안
<p>제40조의4 (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u>신고합과 동시에</u>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4.(생략)</p>	<p>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u>신고하고 납부하고자</u>----- ----- -----<u>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거</u>----- ----- -----.</p> <p>1.~ 4.(현행과 같음)</p>
<p>제60조(신고·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u>신고납부</u>하여야 한다.</p> <p>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u>제조담배</u>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에 <u>신고납부</u>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을 <u>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u>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p> <p>③(생략)</p> <p>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u>제조담배</u>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u>신고납부</u>하여야 한다.</p>	<p>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u>담배</u>----- ----- -----<u>신고하고 납부</u>----- ----- -----.</p> <p>②----- -----<u>담배</u>----- ----- -----<u>신고하고 납부</u>----- ----- -----<u>수입담배</u>----- ----- -----.</p> <p>③(현행과 같음)</p> <p>④----- -----<u>담배</u>----- ----- -----<u>신고하고 납부</u>-----.</p>

현행	개정안
<p>제61조 (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p>1. ~ 3.(생략)</p> <p>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세액에 법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p> <p>1.~3.(현행과 같음)</p> <p>4.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 신고한 세액 ----- ----- -----.</p> <p>5. -----담배 ----- 신고한----- ----- -----.</p>

현 행			개 정 안		
<p>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p> <p>②~③(생략)</p>			<p>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영 제194조의16제3항이 정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p> <p>②~③(현행과같음)</p>		
제90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16일~6월30일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16일~7월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10월16일~10월31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10월16일~10월31일
<p>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가 매월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p> <p>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10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p>			<p>제98조(납기) ①----- -----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 ②----- -----7월31일-----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 -----.</p>		

관계법령 발취

지방세법

第4條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規定된 그 權限의 一部를 所屬公務員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第51條의2 (書類送達의 方法) ①第51條의 規定에 依한 書類의 送達은 交付 또는 登記郵便에 依한다. 다만, 이 法에 依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第121條 (不足稅額의 追徵 및 加算稅)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4조의17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96조의7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96조의8 (수시부과시의 세액계)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6조의17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제233조의6 (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228조 및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2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3조의7 (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8조의2 (재산세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20의 규정은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1997.10.1>

②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4조의16 (과세표준액) ①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6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 ①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